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4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활동 등에 관한 지도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지원과), 02-970-6043

제정 2015. 10. 23.

개정 2017. 7. 25.

전부개정 2021. 10. 1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라 학생자 치기구 조직, 운영 및 그 밖의 학생(단체)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지도교직원) 총장은 원활한 학생(단체)활동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직원(지도교수, 담당직원 및 조교)을 둘 수 있다.

제2장 학생자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

- 제3조(조직) ① 학생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학생활동을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총회 등 의결기구,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등 집행기구, 단과대학학생회 등 자치기구, 교지편집위원회 등 상설자치기구, 재정감사위원회 등 특별자치기구로 구성된다.
- ③ 그 밖의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

칙(이하 "총학생회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- 제4조(선발) ①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
- 1.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학생
- 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
- ②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로 당선 또는 선임된 학생은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(원) 및 학부(과) 학생회 대표자로 당선 또는 선임된 학생은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승인) ① 학생자치기구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학생자치기구는 그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6조(변경신고)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는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1개월 내에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효력정지) 학생자치기구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.

제3장 학생(단체) 자율 활동

- 제8조(집회신고)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학생(단체)(이하 "학생(단체)"라 한다)은 교내·외에서 집회 또는 행사를 열고자 할 때 집회 예정일 5일 전에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은 신고한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학생 집회 또는 행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학생(단체)이 외부 인사를 교내에 초청하여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에는 외부 인사인적사항을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(단체)은 신고한 집회 또는 행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- 제9조(단체여행) 학생(단체)이 단체여행을 계획 및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목적 및 목적지 등을 명시하여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학생출간물 발간) ① 학생(단체)이 출간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간 및 배포에 관한 계획서를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총학생회 및 중앙 동아리 등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은 학생처장이 지도하고, 대학 (원) 및 학부(과) 학생회 등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은 소속 대학(원)장이 지도한다.
- ③ 교지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학생회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공고물 게시) ① 학생(단체)이 학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공고물은 지정된 게시판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, 정해진 게시기간이 경과하면 철거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설이용) ① 학생(단체)이 교내 시설 및 교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 (원)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사용을 신청하여 소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시설 및 교구 사용 중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교구를 가공할 수 없으며, 파손 또는 손실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
- 제13조(학생활동 제한) ① 학생은 수업·연구 등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②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· 벌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지도대상 학생(단체)교외활동

제14조(지도대상 학생(단체)교외활동) 지도대상 학생(단체)교외활동(이하 "학생(단체)교외활동"이라 한다)은 대학(원), 학과(부), 본부 부서 등이 주관하는 학생활동으로,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.

- 1. 각종 산업시찰 또는 현장견학
- 2. 각종 경연대회 또는 학술대회 참가
- 3. 각종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관
- 4. 단과대학별 신입생 OT(새터)
- 5. 졸업여행 및 해당 학과 전체 학생수련회 참가
- 6. 그 밖의 교육과 연계된 학생(단체)교외활동으로서 소속 대학(원)장, 학생처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활동
- 제15조(인솔교직원) ① 학생(단체)교외활동에는 인솔교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학생(단체)교외활동은 소속 대학(원)장, 학생처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6조(학생(단체)교외활동 승인 신청 등) 지도대상 학생(단체)교외활동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<제300호, 2015. 10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교외활동 및 행사에 관한 지도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<제400호, 2017. 7. 25. 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5호, 2021. 10. 19. 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